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2004년 7월부터 토요일 휴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(11월-2월) 퇴근을 1시간 연장함(안 제13조)

3. 내　　용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: 2004. 10. 15 ~ 2004. 11. 3(20일간)

성주군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

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일광 절약시간제 실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말까지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,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.	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
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종무시간이 13시인때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.	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.
부 칙	부 칙
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